

# 環境庁 告示 (第81-8号)

環境保全法 第27条 2의 规定에 의거, 燃料用 油類의  
硫黃含有基準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1년 6월 1일  
環境庁長

## 燃料用油類의 硫黃含有基準

第1条(目的) 이 告示는 環境保全法 第27条 2의 규정에 의한 燃料用 油類의 유황함유기준과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条(用語의 定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

1.“燃料用 油類”라 함은 原油를 精製한 石油製品 중 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輕質重油, 重油, 텅커C油 및 輕油를 말한다.

2.“硫黃含有量”이라 함은 연료用 油類 속에 함유된 硫黃分의 중량백분율을 말한다.

3.“事業者”라 함은 環境保全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者를 말한다.

4.“低硫黃 燃料油”라 함은 연료用 油類의 硫黃함유기준에 적합한 연료를 말한다.

5.“自動車의 使用者”라 함은 自動車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管理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 1 호서식]

(업 소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1437.2-

198 .

수신 환경청장

발신 ○○○ ④

### 저유황 연료유 사용(변경) 계획서

사업자	①업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배출시설 관리인	⑤배출시설 허가일	19 . . .	
현황	⑥유종		⑦유황함유량(%)	⑧사용량(Kℓ)	년: 월(최대):	
	⑨사용용도 (해당사항 ○표)	산업, 발전, 난방, 기타( )	⑩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용 (변경) 계획	⑪저장용량 (Kℓ)	(탱크수: )	⑫수입방법 (해당사항 ○표)	정유공장, 대리점, 주유소, 기타( )		
	⑬유종		⑭유황함유량 (%)	⑯사용량 (Kℓ)	년: 월(최대):	
	⑮사용(변경) 개시일	19 . . .	⑰변경사유			

첨부: 연료의 개선, 대체 또는 배연탈황시설 설치에 의하여 연료를 변경할 때에는 계획서 1부

## □ 特 輯 : 低硫黃油와 脫公害

6.“石油精製業者”라 함은 石油事業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第3条(適用範囲) 이) 告示의 적용 대상 지역 및 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서울特別市에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자와 서울特別市의 관할 구역내에서 연간 액체연료 100Kℓ 이상을 사용하는 事業者

및 蔚山市 소재 韓國電力 株式会社의 蔚山火力과 嶺南火力發電所로 한다.

第4条(燃料用 油類의 硫黃含有基準) ①燃料用 油類의 유황함유기준은 別表 1과 같다.

②事業者 및 自動車의 사용자는 低硫黃燃料油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연료의 변경 또는 代替를 계획중이거나 또는 배연탈황시설설치를 계획중인 者로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環境府長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2.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를 工程中에서 흡수하거나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環境府長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第5条(低硫黃燃料油 使用計劃제출) 事業자는 低硫黃燃料油 사용 개시 10일전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低硫黃燃料油 사용계획을 環境府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6条(低硫黃燃料油使用命令) 環境府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環境保全法 제27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別表 1의 硫黃含有기준을 초과한 油類의 사용을 제한하고 低硫黃燃料油를 사용하도록 事業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第7条(実績報告) 事業者, 石油精製業者 및 石油輸入業者は 低硫黃燃料油의 생산, 판매 및 사용 실적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별지 제 3호서식 및 별지 제 3-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分期 개시일로부터 15일내에 環境府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8条(硫黃分 분석방법) 燃料用 油類中の 硫黃含有量 분석방법은 한국공업규격 KS M 2027, KS M 2060 또는 環境府長이 인정하는 최신정밀 분석방법에 의한다.

(# 2)

### 저유황연료유 사용명령서

제 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 맑은 공기와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 제27조의 2 및 환경청고시 제81-8호 제6조 규정에 의거 본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명령함.

#### 가. 사용할 연료의 유황함유 기준

유종 기준	경질중유 (B-A)	중유 (B-B)	B-C 유	경유
유황분 (%)	1.6 이하	1.6 이하	1.6 이하	0.4 이하

다만, 경유는 차량용에 한함.

- 저유황 연료유 사용 개시일 : 19 . . . . . 부터
- 동 고시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유황 연료유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전 10일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제출할 것.
- 연료의 개선, 대체 또는 배연탈황시설 설치 계획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할 것.
- 특별한 사유없이 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환경보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됨을 첨언합니다.

[제3-2호 서식]

(업 소 명)										
분류기호 1437.2-				198						
수 신 환경청장				발신 ○ ○ ○ ☺						
<u>/ 4 분기 저유황 연료유 생산(수입) 공급 실적보고</u>										
단위 <span style="float: right;">{ 물 량 : Kℓ 유황분 : Wt %</span>										
사 업 자	① 대표자			② 업종	석유정제업, 수입업(해당사항 ○표)					
	③ 소재지			④ 전화	사무실 : ( )		공장 : ( )			
원 유 도 입 실 적	산지별		⑤ ( ) 산	( ) 산	( ) 산	( ) 산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계									
구 분	유 종			⑥ B-C유		⑦ B-B 유	⑧ B-A 유	⑨ 경 유		
	S : 1.6%	S : 2.5%	S : 4%					S : 0.4%	S : 1.0%	⑩ 등유
	⑬ 전월재고	생 산								
생 산 (주)	수 입									
	⑭ 생 산	( ) 월								
	( ) 월									
	( ) 월									
수 입 (주)	계									
	⑮ 수 입	( ) 월								
	( ) 월									
	( ) 월									
출 고 (주)	계									
	⑯ 출 고	( ) 월								
	( ) 월									
	( ) 월									
차 가 소 비 (주)	계									
	( ) 월									
	( ) 월									
	( ) 월									
년 누 계 (주)	생 산									
	수 입									

## □ 特 輯 : 低 硫 黃 油 와 脱 公 告

第9条(시험분석기관) 燃料用  
油類의 유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1. 国立環境研究所
2. 市道보건연구소
3. 其他 環境庁長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第10条(確認検査) 環境庁長은  
低硫黃燃料油의 사용여부, 사용실  
적, 생산판매 실적 및 硫含有量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  
업자, 자동차의 사용자, 石油販  
売業者 및 石油精製業者의 사업장  
및 자동차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附 則

(1) 이 告示는 1981年 7月 1  
日부터 시행한다.

(2) 제 3조 규정에 의한 蔚山市  
소재 韓國電力주식회사의 蔚山火  
力 및 嶺南火力 發電所의 발전용  
연료는 別表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別表 1]  
연료용유류의 유황함유기준

(단위: Wt%)

유 종 별	유황함유 기 준
경질중유 (B-A)	1.6이하
중 유 (B-B)	1.6이하
벙커-C유 (B-C)	1.6이하
경 유	0.4이하

고 1日 연료사용량 중 1,590Kℓ'  
는 유황함유량 2.5%이하로, 나  
이하로 한다. \*

며지 사용량은 유황함유량 4.0%  
이하로 한다. \*

### (제 3 호서식)

(업 소 명)		(전화 번호)		198 . . .		
분류기호 1437. 2-		수 신 환경청장		발신 ○○○ ①		
/ 4분기 저유황 연료유 사용실적 보고						
단위: Kℓ						
사 업 자	①업 종	②소 세 치	③대 표 자	④배 출 시 설 판 리	⑤종 업 원 계( ) 남( ) 여( )	
	⑥주 요 생 산 제 품	⑦용 도 (해당사항○표)	⑧유류저장 용 량	산업, 난 방, 발전 기타( )		
구분	유총 유황분	⑨B-C유 1.6% 2.5% 4.0%		⑩B-B 유	⑪B-A 유 ⑫경 유 0.4% 1.0%	
	⑬전분기재고	⑭( )월	⑮( )월	⑯( )월	⑰( )월	
입 및 사 용 실 적	계					
	계					
	계					
	계					
	계					
	⑯분기말재고					
기	⑯고체연료사용량	연료명: ( ) 사용량: ( ) 톤 / 월				
타	⑯참고사항: (1. 저유황유 불사용 사유) (2. 연료대체, 개선계획)					268mm × 380mm
5303-17D 81. 6. 1승인					(신문용지 54g/m²)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낭비없는 건전 휴가